

Korean Version 1. September, 2010

하와이 행정 법규
HAWAII ADMINISTRATIVE RULES

타이틀 8
TITLE 8

교육부
DEPARTMENT OF EDUCATION

부제 2
SUBTITLE 2

교육
EDUCATION

제 1 부
PART 1

공립학교
PUBLIC SCHOOLS

제 19 장
CHAPTER 19

학생 비행, 징계, 학교 수색과 압수, 위반 신고, 경찰 인터뷰와 체포,
그리고 반달리즘의 손해배상

STUDENT MISCONDUCT, DISCIPLINE, SCHOOL SEARCHES AND SEIZURES, REPORTING
OFFENSES, POLICE INTERVIEWS AND ARRESTS, AND RESTITUTION FOR VANDALISM

본법 1

일반 조항

§8-19-1	철학
§8-19-2	정의
§8-19-3	적합성
§8-19-4	분리가능성

적합하도록 제공하는 포괄적인 학생 지원 제도 (CSSS)로 알려진 협동적이고 제도적인 개혁을 착수했다. 학생들, 교사들, 가족과 기관들간에 배려와 지원적인 관계로 협동하는 CSSS 공동체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촉진한다. 본 학교 제도의 목표는 2005년 6월 안전하고 배려적이며, 보살피며, 질서있는 교육환경에서 모든 학생들이 공립학교 졸업자, 2005-2008년의 교육부의 전략 계획, 하와이 주의 교육부, 교육장의 미래상을 획득하도록 하는 교육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모든 학생들은 교육부의 교통시설에서, 또는 다른 학교이내에서나 학교 밖에서의 교육부 지원 활동중에 존경스럽고, 책임감있고, 안전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것을 학교 차원 징계의 예방적인 제도의 설립을 통해 지원한다.

(다) 그러나, 학생의 행위가 기존의 정책, 규정, 교육부의 법규, 주나 지방법을 위반한다면, 교육부는 이 장에 부합하여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 운영 징계의 목적은 다음을 하기 위함이다:

- (1)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교육 환경을 촉진하고 유지한다.
- (2) 교육적 절차와 자아-발달에 유익한 적당한 행위를 인정하고 가르친다.
- (3) 교육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자폐적이고, 자멸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에서 학생을 방지한다; 그리고
- (4) 교육적인 활동과 책임감이 방해받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을 확실히 하여 학생의 적당한 품행을 유지한다.

(라) 교육부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후원된 학교 프로그램, 활동 또는 기능을 지휘하거나 참여하여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데 열중하도록 고용된 교육 종사자는 학생에 의해 범해진 그들에게 부당한 방해, 또는 무질서의 위협이나 폭력의 행위, 또는 두가지 모두로부터 벗어날 합리적인 기대를 한다.

(마) 이 장 하에서 취해진 징계 조치와 더불어서, 반달리즘이나 태만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 장의 조항과 합치하여 만들어 질 것이다. 손해배상의 목적은 반달리즘이나 태만 행위를 억제하고 반달리즘이나 태만의 행위에 의해 손상된 공공 소유물의 비용을 복구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있다.

(바) 때때로 경찰관이 학생들을 인터뷰하거나 구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장은 또한 학생들의 출석의 흥미와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의무를 수행하는 경찰 직원들과 협력하고, 학교 환경을 보존하고, 학교 직원들의 책임을 서술하는 하는 것을 의도한다. [유효 82년 9월 1일,

86년 5월 23일 am, 편집 93년 7월 19일 am,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편집, am, 09년 9월 10일 편집, am] (권위: HRS §302-A1112) (보정: 하와이 헌법. 규약. X. §3; HRS §§302-A-1101, 302A-1112)

§8-19-2 정의. 이 장에서 이용된 것과 같이:

“독설적인 언어”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단어를 이용하는 구어의 메시지를 의미하며 욕설, 욕하기, 독설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습격”은 의도적으로, 고의로, 무모하게, 또는 태만하게 위험한 도구가 있거나 없거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적인 상해나 신체 상해를 유발하는것을 의미한다.

“왕따 시키기”는 한 학생이나 집단의 학생들이 다른 특정한 학생(들)에게 일정한 문서의 형태로, 구술로, 그림으로서나 육체적 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다른 학생(들)에게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인 해악을 유발하는 것; 다른 학생(들)에게 겁먹게 하고, 헐박적이고, 또는 모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필요한 만큼 심하고, 지속적이고, 침투성이 있는행위를 의미한다.

“절도”는 사람, 또는 학교 소유물이나 학교에 있는 다른 소유물들에 불리한 위반을 범하는 의도를 가지고 교육부가 소유했거나 운영하는 빌딩에서 학교 인가없이 출입하거나 머무르는것을 말한다.

“수업 빼먹기”는 수업에 인가되지 않은 학생의 부재를 의미한다.

“종합 지역 교육장”은 종합 지역과 학교 단지의 수석행정관을 의미한다.

“금지품”은 학교 구역에 과거에 신체 부상이나 학교 운영의 방해로 이끄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는, 지방 학교 규정에 정의된 것으로써, 내보이거나 소유하는것이 불법인, 바로 그 소유물을 의미한다.

“통제된 약물”은 329 장항, 하와이 개정 법령 I 부터 V 까지에서 기술된 약이나 약물을 의미한다.

“교정 과 학생과의 회의”는 학생이 행정관, 자신의 교사(들), 그리고/또는 부모와 만나고 적당한 행위를 보여주는것에 대한 지침을 받는것을 말한다.

“위기 제거”는 위기상황의 경우에 학교에서 학생이 즉각적으로 배제되는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그 학생의 품행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신체적 안전에 뚜렷하게, 즉각적인 위협을 나타내거나, 또는 그 학생이 극도로 분열성이어서 다른 학생들이 불필요한 방해없이 그들의 교육을

추구할 권리를 필수적으로 보존하려면 그 학생을 즉각적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왕따 시키기”는 한 학생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해를 다른 학생 (들) 이나 학교 직원들에게 끼치는, 예를 들어, 인터넷, 휴대폰, 개인 휴대용 정보 단말기 (PDA) 또는 무선 소형장치 등, 학생이 다른 학생이나 교육부의 직원에게 위협적이고, 협박적이거나 모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기에 충분한 정도의 심하고, 지속적이거나 침투성이 있는 전력으로 전송된 행위이다:

- (1) 캠퍼스에서, 또는 교육 구역의 다른 부서에서, 교육 교통시설 부서에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교육부 후원이벤트 또는 활동 기간동안
- (2) 교육부가 인가한 통신없이 교육부 데이터 시스템 부서를 통해서; 또는
- (3) 캠퍼스 밖의 네트워크가 다른 학생이나 학교 직원, 또는 둘 다에게 심하고, 위협적이고, 협박적이거나 모욕적인 교육 환경 조성에 충분할 심하고, 지속적이거나 침투성이 있는 품행을 통하여

희롱, 위협 또는 왕따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는, 선택된 단어나 취해진 행동이, 그 품행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일어났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이 되었는지, 그 가해 본인이 그 피해자와 어떻게 소통하였는지, 또 그 동기가, 인정했는지 또는 교묘히 암시되었던지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져야 한다. 전자 전송은 자료, 컴퓨터를 통해 이용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다른 컴퓨터화된 시스템, 휴대폰이나 이메일, 텍스트 메시지, 블로그, 사진, 그림, 비디오 클립, 온라인 공동체 웹사이트, 또는 팩스, 또는 전송내용의 조합을 나타내는 다른 비슷한 전기 장치같은 이용을 포함하지만 그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위험한 기구, 또는 ‘물질’“은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죽음의 생성이나 신체의 부상이 가능하게 하다고 알려진 것으로 이용이 되었거나 이용될 의도가 있었던 방식에서 임의의 폭발적인 장치, 기구, 재료, 또는 화학약품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항목은 칼, 파이프 폭탄장치, 폭죽, 최루 스프레이, 최루가스, 막대기나 던지는 별과 같은 무술 장치들; 파이프, 막대기, 야구 방망이를 사람에게 신체의 상해를 유발하거나 협박하기위해 위협하는 식의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위험한 무기”는 유일한 디자인과 목적이 신체의 부상이나 죽음을 가하기 위한 도구이다. 그같은 도구는 칼, 단도, 버터플라이 나이프, 날이 튀어나오는 칼, 검정철제곤봉, 슬러그 샷, 경찰곤봉, 금속 너클, 또는 신체부상이나 죽음을 가하는 다른 무기.

“부서”는 교육부를 의미한다.

“억류”는 학생을 그 학생의 비행에 대한 징계 조치의 형태로서 학교 공무원에 의해 미리 규정되어 있을 것과 같은 학교내의 교육적이거나 다른 활동을 그 학생이 수행하도록 그 학생을 비-교습시간 동안 학교의 캠퍼스에 억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 전학”은 8-19-6 항의 위반의 결과로서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을 제거하는것을 말한다. 징계 전학은 지역적인 예외를 허락하는 것의 목적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상황하에 타이틀 8 의 13 장 아래의 지리학적인 예외의 철회를 포함하는 사례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퇴학”은 하와이 공립학교에서 총기 위반에 대한학생을 학년의 잔여 부분이나 적어도 1 년 이상의 기간동안 학교에서의 퇴학을 말한다.

“무질서한 품행”은 교육부의 다른 구역이나 캠퍼스에서,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 또는 학교내외에서 교육부가 후원한 활동이나 이벤트에서의 다음의 활동들이나 행위들을 의미한다.

- (1) 격투나 협박, 소리지르기, 고함지르기와 같은 폭력적이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 또는 둘 다와 같은 행위에 관여되는것;
- (2) 정상적인 학교 운영의 방해를 유발하기 위해 불합리한 소음을 만드는 것;
- (3) 무례하게 조잡한 언사, 제스처, 또는 표현이나 무례한 언어를 참석한 누구에게든지 건네는것으로 폭력적인 대응을 유발;
- (4) 임의의 인가된 승낙 또는 허가서 하에서 수행되지 않은 임의의 행위에 의해 위험하거나 신체적으로 공격적인 조건을 조성하는것;
- (5) 구걸이나 자선품 간청이나 다른 원조 형태의 목적으로 공립학교내에서 임의의 사람을 차단하거나 훼방하는것; 또는
- (6) 합의상의 섹스나 합의상의 신체 접촉, 또는 둘 다에 해당하지만 제한되지 않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약물 소지”는 임의의 장비, 상품이나 임의의 종류의 재료이거나 그 조합된 것들을 이유로해서, 이용하거나, 이용을 의도하거나 또는 이용하도록 고안되어, 수목, 수확, 생산, 저장, 함유, 은폐, 투입, 섭취,

흡입, 또는 이 장의 위반에 있는 통제된 약물을 인간의 신체속으로 삽입하는것. 그것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제한하지는 않는다:

- (1) 도구상자, 장치, 설비, 별개의 장치, 균형저울, 믹서기, 그릇, 컨테이너, 숟가락, 캡슐, 풍선, 봉투, 통제된 약물을 준비, 절차, 혼합, 저장, 또는 은폐하기 위해 고안되었거나 이용되었거나, 이용을 위해 고안이 된 다른 물건;
- (2) 피하주사기, 주사기, 또 이용되었거나, 이용을 위해 의도되었거나, 또는 인간의 신체속으로 통제된 약물을 투입할 이용을 위해 고안이 된 다른 물건;
- (3) 이용된, 이용을 의도하여진 물건, 또는 마리화나, 코케인, 하시시, 또는 하시시 기름이나 메탐페타민의 형태, 동화작용의 스테로이드를 섭취, 흡입, 또는 다르게는, 또는 인간 신체속으로 투입하는 다음과 같은 :
 - (가) 금속, 나무, 유리, 아크릴, 돌, 플라스틱, 또는 세라믹 파이프, 물 파이프, 흡연과 탄화 마스크, 로치 클립; 즉, 너무 작아지거나 손에 잡기에 너무 짧아졌을 때 마리화나 담배와 같은 타는 재료들을 붙들기 위해 이용된 물건들을 의미한다.
 - (나) 소형 코케인 숟가락과 코케인 물약, 마리화나용 물파이프, 얼음 파이프, 또는 냉각장치; 그리고
 - (다) 하와이 개정 법령 329-1 항에 따라 정의된 것과 기술된 것과 같은 임의의 그리고 모든 다른 마약의 소지

“교육 종사자”는 임의의 행정가, 전문가, 카운슬러, 교사, 또는 교육부의 고용인이나 교육부에 의해 후원받거나 승인받은 학교 프로그램, 활동, 또는기능에서의 자원봉사자인 사람이거나 계약적인 기반에서 또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것에 몰두하는 교육부에 의해 고용된 사람이다.

“강탈”은 사람에게 의해서 범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이:

- (1)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나 서비스를 강탈하려는 의도로, 획득하거나,
 - 통제력을 발휘하는 다음과 같은 언어로 협박하는 것에 의해서나 행위에 의해:
 - (가) 위협당한 그 사람에게나 또는 다른 임의의 사람에게 미래에 신체 부상을 유발시킬것이라고;
 - (나) 소유물에 손상을 유발할 것이라고;
 - (다) 위협받은 사람이나 임의의 사람에게 신체적인 감금이나 구속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고;
 - 라) 비밀을 누설하거나 주장된 사실을, 그게 사실이든지

거짓이든지 간에, 미움, 경멸, 또는 조롱의 대상으로서, 또는 사람의 신용이나 사업 평판을 악화할것을 공표하겠다고;

- (마) 위협받은 그 사람에 의해 또는 다른 임의의 다른 사람에게 은폐되기 위해 찾아진 임의의 정보를 누설하겠다고;
- (바) 제공된 정보를, 또는 다른 사람의 법률적인 주장이나 방어에 연관된 정보의 억제;
- (사) 공무원으로서 보류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공무원으로서 그같은 조치를 취하거나 보류하는것을 유발하겠다고;
- (아) 파업, 불매운동, 또는 다른 비슷한 집단행동을 유발하거나, 학생이 나타내는것을 주장하는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받았거나 요구되지 않은 소유물을 획득하겠다고; 또는 행위를 범하는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 사람의 건강, 안전, 교육, 사업, 소명, 직업, 재정 상태, 평판, 또는 개인적인 관계와 연관하여 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해악을 가하려는 계산된 다른 행위를 하는 것;

- (2)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가진 법적 권리를 자제하는 행위에 참여하도록, 또는 그 사람이 가진 참여할 권리가 있는 행위의 자제하도록 언어 또는 행위로 (A)항에서부터 (I) 항에까지 정의된 것의 행위를 제시함으로 협박하여 강요하거나 설득하는것; 또는,
- (3) 임의의 신용의 확대든지 만들거나 재정하거나, 또는 터무니없이 높은 수단으로 임의로 신용 확장을 수집하는것.

“격투”는 분노나 적개심과 관련된 신체 접촉을 자극하거나 선동하는것을 의미한다. 격투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다:

- (1) 분노나 적개심과 관련된 상호 신체 접촉에 관여되는것;
- (2) 놀림, 괴롭힘, 위협, 또는 다른사람들을 위압하여 분노나 적개심과 관련된 신체 접촉을 초래하는것;
- (3) 놀림, 괴롭힘, 위협, 또는 위압적인 행위, 언어적 선동에 대한 육체적 보복; 또는
- (4) 사람이 함께하고 용기를 주는것으로 격투를 육체적으로 지원하는것.

“총기” 는 이하를 의미한다:

- (1) 선발총, 산탄총, BB 총, 딱총, 페인트볼 총을 포함하는 공기총들이나, 심본인 활 또는 다른 발사물을 발사하도록이나, 고안 되었거나, 또는 쉽게 변환될 수 있는 다른 도구들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 임의의 무기.
- (2) 그와 같은 무기의 프레임이나 수신기;
- (3) 임의의 총기 머플러나 총기 소음기; 또는
- (4) 임의의 파괴적인 장치. 용어 “파괴적인 장치는” 이하를 의미한다:
 - (가) 임의의 폭발성의, 선동적인 또는 독가스:
 - (i) 폭탄;
 - (ii) 수류탄;
 - (iii) 추진제 화약이 있는 로켓;
 - (iv) 폭발성이나 방화성 화약이 있는 미사일;
 - (v) 지뢰; 또는
 - (vi) 앞에서 설명한 임의의 조항과 비슷한 장치
 - (나) 다른 발사물을 발사하도록 변화될 것이거나 쉽게 변환될 수 있는 임의의 무기, 폭발물이나 다른 추진제의 조처에 의해 발사하는 무기 포함; 또는
 - (다) 위에서 설명한 임의의 변환에서의 사용을 위해 설계되거나 의도된,
 - (라) 위에서 설명한 파괴적인 장치가 쉽게 합성될 수 있는 임의의 부품이나 조합

“위조” 는 다음을 의미한다:

- (1) 학생이 문서에 학생 자신의 이름 이외의 다른 이름을 서명하는 것 또는;
- (2) 모금 행사 또는 스포츠 이벤트 티켓과 같은 자료의 불법적 양산이나 또는 불법 복제

“도박”은 그 사람이나 누군가가 임의의 특정한 결과로 그 이벤트에서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받을 것이라는 동의나 이해를 근거로 사람의 컨트롤이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은 경연의 기회 또는 미래의 조건부의 결과상의 가치있는 것에 돈을 걸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도박은 구매, 담보나 상품의 미래의 날짜의 판매, 구매를 위한 계약 등 계약법과 보상금과 보증의 계약과 생명, 건강, 또는 사고 보험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 않는 기회의 발생에 의해 야기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동의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제한 되지 않는 것에서의 타당한 선의의 사업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

“희롱”은 학생이 희롱하고, 왕따를 시키고, 사이버왕따 시키기를 포함한, 짜증부리고,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는 다음의 행위와 같은것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것에 관여하는것을 의미한다:

- (1) 치기, 밀고 밀치기, 발차기, 또는 다른식으로 무례한 방식으로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나 그런 사람에게 신체 접촉으로 공격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는것;
- (2) 모욕, 조소, 또는 다른 사람을 폭력적인 반응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도전하는것;
- (3)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압력을 가하고, 위협을 느끼게 하고, 또는 위협하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종, 피부색, 출신국가, 조상을 포함, 성별의 정체성과 표현 종교, 장애, 또는 성적 지향성이 위협적이고, 적대적이거나 공격적인 교육환경, 학생의 교육을 방해하거나, 그 외에 학생이나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기회에 역효과를 조성하는 구두나 비언어의 표현을 만드는것
- (4) 중상, 무례한 몸짓 취하기, 모욕, 굴욕감, 위협당함, 헐박당함, 또는 당황함을 느끼는 다른 사람을 놀리는 것;
- (5) 합법적인 통신의 목적없이 전화를 거는 것;
- (6) 반복적인 통신을 익명으로 하는것, 또는 극도로 불편한 시간에, 또는 캠퍼스내에서 또는 다른 교육부 구역의, 교육부 교통시설에서, 또는 학교 소유물 내외에서의 교육부 후원 활동이나 이벤트에서 공격적으로 상스러운 말을하는것
- (7) 다른 사람들이 학교 건물, 시설, 서비스, 또는 화장실 시설을 포함하지만 제한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지면의 합법적인 출입이나 이용을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포를 야기시키는것; 또는
- (8) 신체적으로 해악을 끼치는것, 신체적으로 제한하는것, 위협하는것, 또는 추적하는것, 또는 전술내용의 조합.

“심한 훈련”은 임의의 품행이나 시착의 방법이 임의의 학생조직이나 활동으로, 그것이 캠퍼스내 에서이거나 다른 교육 구역의 다른 부서에서나, 교육부 교통시설에서나, 학교 소유물 내외에서의 교육부 후원의 활동이나 이벤트 도중이든지 간에, 임의의 학생의 신체적이나 정신적 건강을 의도적으로나 무모하게 위태롭게 하는것을 의미한다. 그와 같은 품행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데, 매질, 폭행, 낙인, 강요된 미용체조, 날씨에의 노출, 임의적인 음식, 술, 음료, 마약이나 다른 약물의 강제적인 소비, 음란물에 노출, 또는 임의의 학생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 건강 혹은 이모두 혹은 학생의 안전에 역효과를 끼칠, 또는 임의의 학생에게 수면이나 휴식의 상실, 고립의 연장, 또는 개인적인 굴욕을 포함하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는다른 취급 또는 강요된 신체적 활동이다.

“납치”는 위협이나 인식된 위협으로 다른 사람으로 부터 갈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살인”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자재와 장비의 부적절하거나 의문스러운 사용, 또는 두가지 전부”는 학생이 컴퓨터와 네트워크 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인터넷 이용 정책¹, 교육부의 인터넷 이용 규제², 또네트워크 지원 서비스 지사의 허용가능한 이용자 지침³을 위반하는 때를 의미한다. 교육부의 컴퓨터와 네트워크 자원의 부적절하거나 의문스러운 사용의 예는 이하를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데, 필터를 비활성화 시키거나 우회시키거나, 도박 소프트웨어, 음악 공유 소프트웨어, 또는 교육부의 임무와 목적을 지원하지 않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사진과 그림이다. 이러한 정책의 사본은 각주에 나열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용가능하거나 학교의 사무실에서 입수할 수 있다.

“불법약물”은, 하와이 개정 법령 제 329 장과 하와이 개정법령 4 부, 712 장 하에 금지된 물질, 보유, 유통, 섭취, 제조, 사용, 판매, 또는 배달을 의미한다.

“학생과의 문제 행위와 관련된 개별화된 교습”은 징계조치의 결과로서 특히 그 학생의 행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 학생이 개별화된 교습을 받는것을 의미한다. 개별화된 교습의 예로는 이하를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데, 행위 지원 계획의 개발 및 구현, 행동계약이나 사회적 기술 훈련개발이나, 또는 이전 전술의 조합이다.

“불복종”은 교사, 임원, 또는 다른 교육부의 직원의 의무적의 명령에 복종하는것을 무시하거나 불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내 정학”은 학생이 징계의 목적을 위해서 그/그녀의 학교 프로그램에서 일시적으로 제거되지만 교습 작업을 완료하기위해 여전히 학교의 직원의 직속 감시하에 남아있는것을 의미한다.

¹ Board of

Policy 2170, amended 10/1997, <http://lilinode.k12.hi.us/STATE/BOE/POL1.NSF>

² Hawaii Department of Education 2170.1 Internet Access Regulations, amended 08/2000, <http://www.k12.hi.us/~atr/policy2000/intaccreg.htm>

³ Department of Education Network and Internet Services, updated 11/29/2004; <http://nssb.k12.hi.us>

“임시 대안 교육 설정” 또는 “IAES” 는그의 현재 교육 배치에서 정학을 당했거나징계의 이유로 제거된, 그 학생은 그 학생의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IEP) 에서 착수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전하고 일반적인 교육의 커리큘럼에서의 참여를 위해 계속하 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그 학생은 계속해서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을 위한 임시적인 배치를 말한다.

“중독성 물질 사용” 은 정상적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에 해당하는 장애를 일으키는 술 등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 임의 물질의 이용을 의미한다.

“레이저 펜/포인터”는 교육부의 인가없는 목적과 사용에 해당하며 겨냥하여 임의의 표면에 점으로서 나타나는 밝은 레이저 빛을 내보내는 장치이다. 인가가 없이는, 캠퍼스, 또는 다른 교육 전제의 부서,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 활동 또는 이벤트 기간동안 그 소지나 이용은 금지되어 있다.

“동의없는 캠퍼스의 이탈”은 학교 공무원의 허가를 먼저 받지않고 학교 구역, 교육부 시설이나 교육부 프로그램을 이탈하는것을 의미한다.

“저 강도 문제 행위”는 저 빈도, 짧은 관여, 또 심각한 해악으로 이끌지 않은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편” 또는 “우송했다”는 서류를 다음을 통해 보냈다는것을 의미한다:

- (1) 정기 우편
- (2) 공인 우편
- (3) 반환 영수증이 요청되었음

“경미한 문제 행위”는 다음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 저-강도 문제 행위를 말한다:

(1) “도전/ 불경/ 불-복종”은 학생이 성인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을 짧거나 저-강도로 관여되는것을 말한다;

(2) “방해”는 학생이 저-강도이고 부적절한 방해에 관여하는것을 의미한다;

(3) “복장 규정 위반”은 학생이 학교에 의해 지정된 복장 규정 지침이외의 의복을 착용하는것을 말한다;

(4) “부적절한 언어”는 부적절한 언어의 학생이 저-강도 사례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신체 접촉”은 학생이 심각하지 않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관여하는것을 의미한다.

(6)“소유물 오용”은 학생이 소유물의 오용에 저-강도로 관여하는것을 의미한다.

(7) “지각”은 학생이 학교가 시작한 이후에 도착하거나, 학생이 수업이 시작한 이후에 수업에 도착하거나, 또는 둘 다를 의미한다.

“태만”은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상실, 파괴, 파손, 또는 학교 책, 장비, 또는 용품의 손상을 초래하는, 철저하고 신중한 사람이라면 비슷한 환경하에서 적용할 정도의 배려를 하는것에 실패하는것이다.

“부모”는 학생의 천성의 또는 법적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다른 법적 보호관찰인을 의미한다. 18 세의 이상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모든 부모의 권리가 그 사실에 의해서 학생에게 전이된다.

“소유물 손상” 이나 “반달리즘”은 다음을 의미한다:

(1) 학교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손상시키는 것;

(2) 학교의 소유지나 시설을 파괴하거나 외관을 손상하는것;
또는

(3) 계획서, 신분증 명찰, 급식 카드등과 같지만 제한되지는 않는 학교 자료를 파괴하거나 외관을 손상하는것

“잘못된 경보의 연출”은 학생이 가짜 화재 경보나 다른 위기상황으로 공식적이거나 자원의 소방소, 임의의 정부기관, 또는 생명이나 소유물에 위험이 관련되는 위기상황을 다루는 공공의 이용시설 내에서나 그곳으로 전송되는 것을 유발하는것을 의미한다.

“손해배상”은 학생의 태만이나 반달행위 결과로 상실되거나, 손상되거나, 깨졌거나, 또는 파괴된 학교 소유물의 합리적인 가치에 대해 하와이 주나 교육부에 금전적으로 또는 비-금전적으로 상환하는것을 의미한다.

“강도”는 절도를 범하거나 납치의 도종을 의미하는데 학생이:

(1)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한 신체적인 부상을 가하거나 가하려고 시도한다; 또는

(2)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서나 가지지 않고:

(가) 주인의 신체적인 저항이나 신체적인 저항의 힘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로 그 사람에게 대항해서 완력을 사용한다;

(나) 소유물을 가지고 탈출하려고 하거나 약탈하는 것에 목인을 강요하기 위한 의도로 현존의 임의의 사람에게 대항하여 완력을 이용한다;

(다)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신체의 부상을 가한다.

“학교 또는 공립학교”는 주의 법률에 부합하여 교육부에 의해 설립되고 유지되는 모든 학문적이고 대학이 아닌 종류의 학교를 말한다.

“학교 책”은 도서관 책과 교과서를 의미한다.

“학교 공무원”은 학생의 감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임의의 행정가, 전문가, 카운슬러, 교사, 학교 안전 경비원, 또는 다른 부서 직원을 의미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학교 연관 위반”은 캠퍼스에서 또는 다른 교육 구역의 부서,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이벤트 또는 활동 기간 동안에 범해진 위반이나, 학교의 소유물과 연관된 위반을 의미한다.

“학교 규정”은 학교에 의해 확립된 학교 차원의 품행 규정을 의미한다.

“학교 임원”은 임의의 교사, 공무원, 또는 부서의 다른 직원을 의미한다.

“수색”은 만일 그 학생에게 자발적으로 금지 품목을 양도하기를 요청한 이후에 그 학생이 거부하고 거기에 이 항 이하에서 그 학생이 법률이나 또는 다른 금지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또는 거기에 불법 마약, 위험한 무기, 위험한 도구나 총기, 또는 이들의 병합된 형태로서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학교 공무원은 핸드백, 전대, 배낭, 재킷, 구두, 양말, 또는 다른 걸옷을 포함하지만 제한되지는 않는 내용물과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압류”는 수색 도중에 발견되었거나 발견되지 않은 금지 품목의 소지를 취하는것을 말한다.

“심각한 징계”는 퇴학, 징계 전학, 위기 제거와 임의의 합계가 10 일이 넘거나 그 영향을 받은 학생이 위기 제거를 당하거나 정학을 당하거나 학생이 위기 제거를 당하거나 한 학기에 합계 10 일이 넘는 정학을 포함하는 징계조치를 말한다.

“성적 공격” 이나 “성 폭행”은 원하지 않은 접촉이나 성적인 부분을 잡거나, 음란한 노출, 성교행위, 오럴 섹스, 또는 다른 성적인 접촉에 관여하기 위해 무력사용, 다른 사람의 뚜렷하게 표현된 거절이나 동의할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성교, 오럴 섹스, 또는 다른 성적인 접촉에 관여하는 것을 말한다.

“흡연” 이나 “담배 사용”은 캠퍼스, 또는 다른 교육 구역의 부서,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에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 이벤트 또는 활동 기간 동안의 담배 상품의 소유, 사용, 판매, 또는 배포를 의미한다.

“알몸 수색”은 성기의 노출, 여성의 유방, 또는 속옷이나 전술사항의 조합을 유발하는 의복의 제거를 요구하는 수색을 의미한다.

“정학”은 학년 도중에 특정한 기간동안 학교에서의 배제를 의미한다.

“탄도칼”은 다음과 같이 자동적으로 열리는 날이 있는 임의의 칼을 의미한다:

(1) 칼의 손잡이에 단추나 다른 장치에 손의 압력을 적용하는 것에 의해, 또는

(2) 타성, 중력, 또는 돌 모두의 작용에 의해

“테러식 위협하기”는

(1)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인 부상이나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심각한 손상을 유발하는 언어 또는 품행에 의한 위협;

(2) 빌딩, 모임의 장소,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대피를 유발할 위험을 무모하게 간과하거나 유발할 의도를 가지는 것; 또는

(3) “매우 흡사한” 총이나 무기를 전시하는 것

“절도”는 다음을 의미한다:

(1) 다른 사람 소유물을 획득하거나 통제 행사하고 그 사람의 소유물을 강탈하는것;

(2) 속이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획득하거나 통제 행사하고 그 사람의 소유물을 강탈하는것

(3) 그 사람이 상실한 것이나 잘못둔 것을, 또는 소유물의 성질이나 수량, 수령자의 신분, 다른 사실들에 대하여 실수로 배달된 것을 알면서도, 그 소유물의 소유주를 강탈하려는 의도로, 그 사람이 발견을 할, 그 소유주에게 알리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획득하거나 통제행사하는것;

(4) 속임수, 허위 증거,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보상을 위한 오직 유효한 사람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서비스를 획득하는것;

(5) 그 사람이 자격을 부과받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서비스의 성향에 대하여 통제 행사하게 하고 그 서비스들을 그 사람 본인의 이익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자격을 부과받지 않은 사람에게 이익이 가게 하는것;

(6) 자금의 요구된 성향을 만드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다음을 하는 것에 의해서이다:

(가) 동의에 근거해서 임의자로부터의 소유물을 획득하는 것이나, 소유물이나 그것의 수입이나 동일한 총액에 예치된 그 사람 소유물로부터이거나로부터 특정한 지급이나 기타의 처분의 법적 의무로 알려진 소유물을 획득하고, 그 자신의 소유물로서 처리하고 필요한 지급을 하는데 실패하거나; 또는

(나) 동의에 근거한 고용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제 삼자의 고용인의 계좌로의 특정한 지급이나 기타의 처분의 법적 의무로서의 서비스를 획득하여도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지급이나 처리에 실패하는것;

(7) 소유물을 강탈할 목적으로 도둑질해진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 받기, 보유하기, 또는 처분; 또는

(8) 줌도둑질:

(가) 임의의 교육부 상점 또는 교육부 소매 설비의 상품이나 제품을 사취할 의도로 소지품으로 취하거나 은폐하는것;

(나) 임의의 교육부 상점 또는 교육부 소매 설비의 상품이나 제품을 사취할 의도로 가격표나 다른 가격 표시를 바꾸는것; 또는

(다) 임의의 교육부 상점 또는 교육부 소매 설비의 상품이나 제품을 하나의 용기에서 다른 것으로, 사취의 의도로 전송하는것

“불법침해”는 임의의 학교 구역 또는 교육부 시설에 학교의 권위자나 경찰관에 의한 합리적인 경고나 요청 이후에 들어가거나 남아 있는것을 말한다.

“무단결석”은 학생이 교장이나 피지명인에 의해 인가없이 학교 캠퍼스나 수업에 결석하는것을 의미한다. [82년 9월 1일 유효; 86년 5월 23일 am; 93년 7월 19일 편집 am; 97년 5월 19일 편집 am; 01년 2월 22일 편집, am; 2009년 9월 10일] (인가: HRS§302 A-1112) (보정: 하와이 헌법. 조항 X, §3; HRS 302A-1101)

§8-19-3 적합성. (가) 이 항의 조항은 정기 학년동안에, 여름 세션, 또는 나이와 관계없이 중간학기, 학교 학기가 진행중일때 정기 수업 외에서 공립학교에 등록된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고, 기숙학교의 학생들은 학교에 의해 전개되고 기숙학교 학생들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 의해 성문의 동의서를 통해서 동의된 기숙사 규칙의 대상이 된다.

(나)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하와이의 행정 규칙은 특수교육이나 다른 항 하의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들의 징계에 적용이 되도록 되어있다.

(다) 2 조에 있는 교장이나 피지명자 참조는 여름학교의 징계 목적을 위한 여름학교 디렉터를 포함한다. 이 장에 있는 학년의 참조는 여름학교가 적용되는 때마다의 여름 학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라) 중간학기 기간동안이나 여름학교에서의 징계는 부 3 장에 의해 운영되게 되어있다. 학생이 학년을 연장하는 동안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의 징계는 장애학생의 하와이 행정 규정 부 2 장 과 지침과 요구사항에 의해 운영되도록 되어있다.

(마) 학생과 관련된 모든 행정 조치와 신고는, 8-34 장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부가하면,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애 학생의 하와이 행정규정이 행해지도록 되어있다.

(바) 정학, 심각한 징계, 또는 반달리즘이나 과실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치도 이항과 합치된 것이 아니고는 취해지지 않게 되어있다.

(사) 학생들의 경찰인터뷰 또는 체포, 또는 둘 다에 관계된 모든 문제는, 이 항과 합치하여 처리되도록 되어있다. [유효 82 년 9 월 1 일; 86 년 5 월 23 일 am; 93 년 7 월 19 일 편집 am; 97 년 5 월 19 일 편집 am; 01 년 2 월 22 일 편집 am; 2009 년 9 월 10 일] (인가: HRS§302 A-1112) (보정: 하와이 헌법. 조항 X, §3; HRS §302A-1101)

§8-19-4 분리가능성. 만일 임의의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이항의 조항이나 그 적용을 이유로 무효로 되었다면, 그 무효성은 그 무효한 조항, 적용이 없이 그 장의 다른 조항이나 적용에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로서, 이 항의 조항이 분리가능하다. [유효 86 년 5 월 23 일 am; 93 년 7 월 19 일 편집 am; 97 년 5 월 19 일 편집 am; 01 년 2 월 22 일 편집; 2009 년 9 월 10 일 am] (인가: HRS§302 A-1112)

본 법 2 정규 학년 동안의 학생 비행과 징계

§8-19-5 징계 조치: 인가. (가) 정학이 학교 정규일의 10 일을 초과하거나 학생이 정학을 당하는 총계일이 임의의 한 학기에 10 일을 초과할 결과를 초래할 정학이나, 퇴학, 또 위기 제거의 연장이 종합지역 교육장에 의해 승인되도록 되어있다.

(나) 위기 제거와 10 일이나 미만의 정학은 교장이나 피지정자에 의해 승인되도록 되어있다.

(다) 징계조치를 결정하는데는, 교장이나 피지정자는 위반자의 의도와, 그 위반의 성질과 심각성, 그 행위가 다른 개인이나 갱과 같은 개인적인 집단에 미치는 영향, 위반자의 나이, 그리고 그 위반자가 반복된 위반자에 의해 범해진 행위인지 아닌지를 포함하여, 그 위반의 영향을 고려하게 되어있다.

[유효 1982 년 9 월 1 일; 재명 §8-19-4 86 년 5 월 23 일 am; 93 년 7 월 19 일 편집 am; 97 년 5 월 19 일 편집 am; 01 년 2 월 22 일

편집 2009년 9월 10일 am] (인가: HRS§302 A-1112, 302 A-1002)
(보정: HRS §302A-1112, 302A-1002)

§8-19-6 금지된 학생의 품행; 수업 위반. (가) 다음의 금지된 품행은 공립학교 제도, 캠퍼스에서, 다른 교육 구역의 부서,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 이벤트 또는 활동 기간동안에 모든 학생에게 적용된다.

(1) A 부류 위반:

- (가) 폭행
- (나) 강도
- (다) 위험한 도구, 또는 약물; 소지나 사용
- (라) 위험한 무기; 소지, 또는 사용;
- (마) 마약 소지; 보유 또는 사용, 또는 판매
- (바) 갈취
- (사) 격투
- (아) 총기; 소지 또는 사용
- (자) 살인;
- (차) 불법마약; 소지, 사용, 또는 판매
- (카) 중독성 물질; 소지, 이용, 또는 판매;
- (파) 소유물의 손상 또는 반달리즘
- (하) 강도행위;
- (하.2) 성범죄; 또는
- (하.3) 테러적 위협;

(2) B 부류 위반

- (가) 왕따 시키기
- (나) 사이버 왕따 시키기
- (다) 무질서한 행동
- (라) 잘못된 경보;
- (바) 위조;
- (사) 노름;
- (아) 성희롱;
- (자) 심한 훈련
- (차) 인터넷 자료나 도구 또는 둘 다의 부적절한 또는 의심스러운 이용;
- (카) 절도; 또는
- (타) 불법침입

(3) C 부류 위반:

- (가) 모욕적인 언어;
- (나) 수업 빼먹기;
- (다) 불복종
- (라) 레이저펜/레이저포인터, 소지나 사용;
- (마) 동의없는 캠퍼스 이탈
- (사) 흡연이나 담배물질의 사용;
- (아) 무단결석

(4) D 부류 위반

- (가) 금지품; 소지 또는 이용;
- (나) 경미한 문제의 행위; 또는
- (다) 다른 학교 규정

(i) 임의의 다른 품행은 학교의 규정에 의해 미리 기술되어 있고 금지되어 있을 수 있다. 개별적인 학교 규정은 출판이 되어 있거나 학교 사무실에서 수사를 위해서 출판되어 있을 수 있고, 이 항의 A 부터 D 항 까지하의 금지된 품행의 학생, 학교 직원, 그리고 학생의 부모에게 알리도록 되어있다.

(ii) 심각한 징계에 해당하는 어떤 징계조치도 부류 D 위반으로서의 임의의 개별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게 되어있다.

(나) 총기를 소지한 임의의 학생은 1년의 역년 이상으로 학교에서 퇴교하게 되어있다. 그 소지나 총기의 사용은 학교 캠퍼스, 또는 다른 교육 구역의 부서,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이벤트 또는활동 기간동안 금지되어 있고 예외는 운동경기 팀, 클럽과/또는 주니어 예비역 장교 훈련단 (JROTC) 의 총쏘기 스포츠 프로그램과 사격술 솜씨 훈련, 교육, 그리고 경쟁의 참여를 위한 것이다. 그 교육장이나 피지명자는, 각 사례에 따라, 총기를 소지한 것으로 발견된 그 학생의 퇴교를 변경할 수 있다. 만일 그 학생이 학교에서 퇴교하면, 8-19-11 항에 제공된 바와 같이 그 학생은 대안 교육활동이나 다른 적절한 조력이 마련되게 되어있다.

(다) 위험한 무기, 탄도칼, 또는 임의의 부적절하게 사용된 칼, 취하게 하는 물질 (들), 또는 불법적인 마약 (들) 을 학교 등교동안 소지, 판매, 또는 사용하는 임의의 학생은 학교일의 92 일 동안까지 학교 등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임의의 학생이 학교 출석, 또는 학교 캠퍼스에서 교육부, 다른 교육 구역의 부서,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의 부서 관리 활동 중,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 이벤트 또는 활동 기간 도중에

불법적인 마약이나 취하는 물질을 사용했거나, 영향하에 있는 것으로 적절히 드러나 보이는 임의의 학생은 92일 까지 학교 등교에서 배제될 수 있고 학교는 약물남용 검사도구를 이용하여 302A-1134.6 (f), 하와이 개정 규정법규에 따라서 약물 남용 평가를 위해 위탁 받을 수 있다. 학교 행정가는 보고된 사건의 수사를 운영하는것으로 이 항의 조항과 더불어 따라야 한다. 또한 학교 행정가는 그 학생이 훈련받은 검사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지명 검사자는 결과를 그 학생과 의논하게 되어있으며 학교 행정가에게 그 결과를 알리게 되어있다. 그 다음에는 학교 행정가가 검사결과를, 법의 신속한 반환 조항, 약물남용 평가를 수행한 의료 보험 기관의 연락처 목록을 가족에게 알리게 되어있다. 검사도중에 그 학생은 혹시 본인이 그 약물 사용 문제로 낮거나, 높거나, 또는 매우 높은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결정하는 일련의 질문들을 요청받도록 되어있다. 만일 그 검사 인터뷰가 높거나 또는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내면, 그 학생은 공식적인 약물 남용 평가를 위해 위탁받게 되어있다. 공식적인 약물 남용 평가는 약물 남용의 문제가 존재하는지를 결정하는 전문가의 의료 의견을 제공하려는 것이고 만일 약물존재가 사실이면, 치료 권유를 제공하기 위한것이다. 만일 약물 남용 평가를 위한 위탁이 되었다면, 의료 건강 보험을 가진 학생은 약속시간을 계획 하도록 의료 건강 보험사에 연락하게 되어있다. 약물 남용 평가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들은 공인 약물 남용 카운슬러 (CSAC), 심리학자, 고급 수행 등록 간호사 (APRN), 정신과 의사, 그리고 면허 의료 사회 사업가들이다. 교장과 피지명자는 1 일에서 10 일 까지의 정학을 승인할 수 있다. 종합지역 교장은 10 일이 넘는 정학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결정권과 징계조치를 결정을 행사하는데는, 교장이나 피지명자가 위반의 성질과 강도성, 위반이 다른사람에게 끼치는 영향, 위반자의 나이, 또 그 위반자가 반복행위 위반자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만일 그 학생이 학교 등교에서 배제되었다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대안적인 교육 활동이나 다른 적절한 학생 지원 조력이 제공되도록 되어있고, 또 그 학생은 적절한 중재 또는 치료 서비스, 또는 두가지 모두가 이에 관해 적용 대상이 된다면,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하와이 행정규정과 합치하여 적절히 학교 직원과 함께 상담하여 결정을 확실히 하도록 되어있다.

(라) 전 분류의 위반사항에 관한 징계조치는 유치원에서부터 12학년까지 이 장과 8-19-5 항에 할당된 당국자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써 다음의 선택권 하에 설립된 절차들과 합치하여 취해지도록 되어있다. 적절한 행위를 가르치기 위한 중재는 징계조치가 부과되었을 때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징계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1) 교정과 학생과의 회의
- (2) 잔류수업
- (3) 위기 제거;
- (4) 학생의 문제 행위와 관련된 개별화된 교습;
- (5) 학교-내 정학;
- (6) 중간학기 대안적 교육환경;
- (7) 권한의 상실;
- (8) 부모 상담;
- (9) 오피스에서의 시간;
- (10) 1 일부터 10 일간의 정학
- (11) 11 일 또는 그 이상의 정학;
- (12) 토요일 학교;
- (13) 징계 전학;
- (14) 대안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위탁;
- (15) 퇴학; 또는
- (16) 손해배상

(마) 학생은 (C) 와 (D)하에 취해진 임의의 징계조치에 의해 상담을 받기로 되어있다.

(바) 어떤 심각한 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도 부류 D 위반을 범하는 것에 대한 임의의 학생에게 부과되지 않게 되어있다.

(사) 어떤 정학이나 심각한 징계도 수업 빼먹기나 무단결석으로 인해 부과되지 않게 되어있다.

(아) 징계 조치의 선택사항인 부조항 (다)와 (라)는 학년내의 징계조치로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자) 징계조치는 만일 그 학년도에서 학생들을 위한 마지막 교습 날짜로부터 20 일 이내에 그 위반이 범해졌다면 다음 학년도로 전이될 수 있다. [유효: 82 년 9 월 1 일; am 과 재명 §8-19-5, 86 년 5 월 23 일; am 과 편집 ; 93 년 7 월 19 일 편집 am; 97 년 5 월 19 일 편집 am; 01 년 2 월 22 일 편집 am] (인가: HRS§302 A-1112) (보정: HRS §§302 A-1112, 302A-1134, 302 A-1134.5)

§8-19-7 위기 제거. (가)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비상시에는, 예비적인 요청과 학생의 행위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안전에 즉각적인 위협을 보이거나지극히 방해적 요소로서 다른 학생들이 불필요한 방해로부터 교육을 추구할 권리를 보존하는데 학생을

즉각적으로 제거 하는것이 필수적이라는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학생을 즉시 위기 제거할 수도 있다.

(나) 위기제거의 부과를 근거로, 학교는 전화로 즉시 학부모에게 알리는 성심성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되어있다.

(다) 위기제거의 후속조치 서면 통지는 직접 배달하거나 또는 부모에게 우편으로 하게 되어있다. 그 위기제거의 통보는 다음의 서면 진술을 포함하기로 되어있다:

- (1) 위기제거의 근거를 구성하는 학생에 의해 범해진 특정한 행위의 의혹;
- (2) 실체화된 특정화된 행위;
- (3) 징계행위의 진술 (들); 그리고
- (4) 학생의 부모와 만나기로 한 학교 행정가에 의해 제공된 그 회의 일자의, 시간, 그리고 장소의 내용.

위기 제거 통보지의 복사본은 복잡한 영역 국장에 우편 발송되게 된다. 이 부조항에서 요청되는 위기 제거 통보지 이외에 교장 혹은 피지명자는 부모에 전화로 취하여 통보지의 수령을 확인하도록 한다.

(라) 위기제거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위기가 더이상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되도록이면 빨리 학교의 출석을 시작하는것을 인가하게 되어있다.

(마) 위기제거는, 상소 도중에 종합지역 교장의 승인에 의해 승인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10 이상의 학교일을 넘지 않게 되어있다. [효력 82년 9월 1일, am 과 재명, § 8-19-6, 86년 5월 23일; am 과 편집, 93년 7월 19일;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am, 편집 09년 10월 9일] (인가: HRS§302 A-1112) (시행: 하와이 헌법. HRS §302A-1112)

§8-19-7.1 수사. (가) 위기제거를 시키거나 또는 교장이나 피지명자가 학생이 정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는것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하는 즉시,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철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되어있다.

(나) 수사를 시행할 때,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학교의 수사에 대하여 부모에게 가능한 한 가장 빨리 성심을 다해서 알리도록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있다. 만일 합리적인 시도를 한 다음에, 그 교장이나 피지명자가 그 부모에게 연락하는것이 불가능하다면, 학교가 그 수사에 개입해서 완결지을 수 있다. 수사는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하게 되어있다. 만일 그 교장이나 피지명자가 위기 제거가 아닌 다른 심각한 징계의 부과를 위한 절차에 착수하려 한다면, 그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수사의

완결점에서, 증인의 진술을 인터뷰, 임의의 다른 증거, 그리고 징계절차의 착수를 위한 교장이나 피지명자의 이유(들)에 대한 간단한 요약서를 포함하는 성문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다)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그 학생에 불리한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있다. 만일 학생이나 부모가 그 기소(들)를 거부하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학교 공무원의 결과를 지원하는 증거를 부모와 학생에게 명시해야 한다. 학생이나 부모는 학생편에서 본 사고에 관한 내용을 제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있다. [효력, 편집 09년 9월 10일] (인가: HRS §§302 A-1112) (보정: RS Imp: 302A-1132)

§8-19-8 정학. (가) 교장이나 피지명자가 학생이 정학 부과를 보장할만한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그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즉시 사고의 수사를 시행하게 되어있다. 수사와 결과의 완결 즉시, 만일 교장이나 피지명자가 그 결과가 정당하다는 결과를 얻으면 학생은 정학을 당할 수도 있다.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부모에게 성문의 결과와 징계 행위를 알리게 되어있다.

(나) 만일 학생이나 부모가 기소(들)를 거부하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학교 당국자의 어떤 증거가 학교의 공무원의 결과를 입증하는지를 학생과 부모에게 나타내게 되어있다. 학생과 부모, 또는 둘 모두는 학생편에서 본 사고의 내용을 제시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있다. 그러나, 학생이 기소, 절차의 성질의 심각성, 그리고 전술한 사항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이 정도와, 지성 혹은 경험의 미숙으로 의미있는 토의를 어렵게 만든다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그 부모가 그 토의에 참여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다) 만일 정학에 대한 임의의 학기에 총계의 숫자가 학교일 10일을 초과하면, 법에 의해 다르게 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이 항의 의무 시행 절차를 따르게 되어있다.

(라) 부모는 길이에 관계없이 임의의 언어 통보를 받게 되어있다. 정학 이전의 경고는, 만일 실질적이면 전화로, 또 성문통보를 수사의 완결에 근거해서 개인적으로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부모에게 전달하게 되어있다. 정학의 통보는 다음의 성문 진술을 포함한다:

- (1) 정학의 근거를 형성하는 학생에 의해 범해진 특정한 행위의 의혹;
- (2) 특정한 행위의 의혹이 실제화되었다;
- (3) 징계 조치(들)의 진술; 그리고

- (4) 학교 행정가에 의해서 부모에게 제공된 회의 일자, 시간과 장소의 내용 통보의 복사본은 종합지역 교육장에게 우편 전송하게 되어있다. 이 부조항에 의해 요구된 통보에 부가하여, 교장은 그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에 의해 통보를 확정하는 시도를 해야한다. [효력 82년 9월 1일; am, 재명 §8-19-7, 86년 5월 23일; am, 편집 93년 7월 19일; 편집 97년 5월 19일; am, 편집 2001년 2월 22일; am, 편집 2009년 9월 10일] (인가: HRS §302A-1112) (보정: HRS §302A-1112)

§8-19-9 10일을 초과하는 정학에 대한 정당한 법절차, 징계 전학과 퇴학

(가) 만일, 수사에 근거해서, 학교장이나 피지명자가 믿기에 학생이 이 장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또 만일 학교장이나 피지명자가 권유하기를 위기 제거가 아닌 다른 심각한 징계가 부가된다면, 학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즉시 종합지역 교육감으로부터 구두의 인가를 취득함에 의한 징계 수속에 착수하도록 종합지역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나) 종합지역 교육감으로부터, 구두의 인가를 취득함에 따라 학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성심성의의 노력을 기울여 그 부모에게 이하의 내용을 알리게 되어있다.

- (1) 심각한 징계 사건,
- (2) 항소의 기회, 그리고
- (3) 징계조치가 즉시 시행이 될 것이라는 것

(다) 종합지역 교육감으로부터 구두로 인가된 3일의 학교 일자 이내에 학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성문의 통지를 그 항소 양식과 그 심각한 징계 사건과 함께 부모에게 우송해야 한다. 심각한 징계 사건 양식위에 종합지역 교육감의 팩스의 서명이나 전자 승인 확정으로 충분하다. 심각한 징계의 성문 통지는 다음 진술을 포함하게 되어있다:

- (1) 심각한 징계의 근간을 형성하는 학생에 의해 범해진 특정한 행위의 의혹
- (2) 실제화된 특정한 행위의 의혹;
- (3) 징계 조치의 진술 (들); 그리고
- (4) 부모가 종합지역 교육감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음을 기재한 문안으로서 부모는 법률 대변의 성문 통지를 적어도 항소 이전 10일 이전에 제시해 그 부모가 적절한 시간에 증거를 제시할 수

있고 항소할 수 있고, 증인을 불러서 반대 심문을 하고, 그리고 법률적 조언자 에게 대변받을 수 있는 내용,

- (5) 만일 그 학생이나 부모가 항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항소는 반드시 성문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심각한 징계 통지가 발행된지 사업일로 17 일에 근접하여 종합지역 학교장이 입수하게 해야 한다. 학생은 그 항소가 미결정일 동안 학교장이 그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교육을 방해 없이 추구할 권리에 상당한 위험을 조성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이상 학생의 학교 출석을 허락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학생은 운동경기, 여행, 또는 클럽을 포함하지만 제한하지는 않는 임의의 특별활동은 참여하지 않게 되어있다.
- (라) 항소를 위한 성문 요청을 받으면, 종합지역 교육감은 10 일 이내의 학교일 이내에, 항소를 계획하고 그 부모에게 날짜, 시간과 장소를 알려야한다. 항소의 성문통지는 부모와 학교장이나 피지명자에게 적어도 항소 이전 15 일 에 우송되어야 한다. 항소는 종합지역 교육감에의해, 또는 교육부의 공정한 공무원, 또는 종합지역 교육감에 의해 지정된 공정한 교육부 공무원일 수도 있는 공정한 피지명자에 의해 시행되게 되어있다. 항소는 다음과 같이 시행되게 되어있다.
 - (1) 항소는 학생이나 부모가 공중에 개방되도록 요구하지 않는 한 폐소되게 되어있다.
 - (2) 부모와 학교장이나 학교장의 피지명자는 증거, 반대 심문 증인들, 그리고 반박 증언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 (3) 부모와 학교장 또는 학교장의 피지명자는 법률적 조언자에 의해 대변될 수 있다;
 - (4) 종합지역 교육감이나 공정한 교육부 피지명자는 증거의 공식적인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다.
 - (5) 종합지역 교육감이나 공정한 교육부 피지명자는 제시된 증거를 공정하게 평가하게 되어있다.
 - (6) 부모는, 부모 본인의 부담으로, 교육부의 테이프 녹음, 교육부의 절차내용에 관한 테이프 녹음 기록을 단지 법원 리뷰의 목적을 위해 요청되면 입수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종합지역 교육감이나 공정한 교육부의 피지명자는 정확한 사본을 기록하거나 소속기록의 테이프를 녹음하게 되어있다.
 - (7) 종합지역 교육감은 항소 상태 결정의 종결로 부터 7 일 이내에

성문으로 분명히 그 행위가 취해질것과 그 같은 조치 (들) 의 근거를 진술하게 되어있다. 성문 결정은 부모, 학생의 공식변호사, 그리고 학교에 복사본을 우편으로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배달되게 되어있다. 만일 징계 조치가 지지되었다면, 그 종합지역 교육감은 그 정학내에 학생이 이미 치룬 정학 날짜의 숫자를 시작일과 종결일 이내에 고려한다. 또 그 정학일수의 총계를 나타낸다.

(마) 부모는 종합지역 교육감의 결정을 항소의 성문 통지와 개인적으로 항소하는 입증 서류와 증거를 특정한 문제들과 논쟁들을 제시하여 교육부의 교육감에게 청문회를 요청하는지 또는 피지명자에게 요청하는지 특정한 진술을 제공함으로써 항소를 할 수 있다. 성문항소는 교육감이나 피지명자에게 종합지역 교육감의 성문 결정의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전달이 되어야한다. 만일 특정한 요청이 그 청문회에서 부여되지 않았다면, 교육감이나 피지명자는 항소에 근거하여 종합지역 교육감과 부모가 제출한 절차의 전체의 기록 결정에 근거하여 결정이 되도록 하게 되어있다. 교육감이나 피지명자가 마지막 성문 결정을 하게 되어있다. 학생은 항소가 미결정일 동안 학교장이 학생의 지속적인 출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그들의 교육을 방해 없이 추구할 권리에 상당한 위험을 조성한다고 판단하지 않은 이상 학생의 학교 출석을 허락받게 되어있다. 학생이 항소가 미결정인 학교로부터 배제되어질 장소에서는, 교육감이나 피지명자는 항소 수령의 날짜의 21 역 이내에 결정하게 되어있다.

(바) 항소의 성문 영수증을 받으면, 부모나 부모의 법률 조연자로 부터, 이 장의 부조항 (라) 을 위해 제공된 종합지역 교육감의 성문결정과 모든 서류와 기록은 교육감이나 피지명자에게 10 역일 이내에 전달이 되어 한다. 교육감이나 피지명자는 증거를 조사하여 14 역일 이내에 징계조치를 근거로 결정의 상태가 되게 해야한다. 결정은 부모 또는 공식의 변호사에게 개인적으로 전달이 되거나 우송되게 되어있다. 또한, 부모는 결정에 성문의 예외를 제출할 권리와 교육감이나 피지명자에게 논쟁을 제시할 권리를 통지받게 되어있다. 교육감이나 피지명자에게 제출할 성문의 예외와 요청은 교육감이나 피지명자에 의해 결정된 상태의 날짜에 의해 결정상태가 된 5 역일 이내에 반드시 받게 되어지게 해야 한다. 부모는 성문의 예외를 제출할 수 있고 논쟁을 제출하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성문의 예외를 미리 제출하지 않고 논쟁을 제시할 권리는 없다. 만일 부모가 성문의 예외를 제 시간에 제출하고 그 논쟁을 제시할 권리를 요청한다면, 교육감이나 피지명자는 논쟁을 제시할 요청을

받은지 학교일 2 일 이내에, 부모에게 그들의 논쟁을 제시할 특정한 날짜,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기로 되어있다. 논쟁의 제시를 위한 날짜는 부모에게 그들의 논쟁을 제시할 특정한 날짜, 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통지의 5 역일 이상 14 역일 이내이게 되어있다. 교육감이나 피지명자는 성문의 결정을 부모나 공식의 변호사에게 논쟁 제시의 14 역일 이내에 우송하거나 만일 부모가 부모의 논쟁을 제시할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부모의 성문 예외의 수령의 14 역 이내에 해야한다. [효력 82 년 9 월 1 일; am 그리고 재명 §8-19-8, 86 년 5 월 23 일; am 그리고 편집 93 년 7 월 19 일; am 그리고 편집 97 년 5 월 19 일; am 그리고 편집 01 년 2 월 22 일; am 그리고 편집 09 년 9 월 10 일] (인가: HRS §302A-1112) (실행: HRS §302A-1112)

§8-19-10 징계 조치의 기간 (가) 만일 징계조치가 항소 절차의 결과로 부가될 수 없다면, 그 징계조치는 어떤 임의의 공립학교에서든 다음 학년으로 전이 될 수 있고 여름학교를 포함하지 않는다.

(나) 만일 징계 조치에서 결과된 그 행위가, 학년내에서 학생의 마지막 교습일로부터 20 일 이내 범해졌다면 그 징계조치는 어떤 임의의 공립학교에서든 다음 학년으로 전이 될 수 있고 여름학교를 포함하지 않는다.

(다) 이 항은 총기 위반에 적용되지 않게 되어있다. 총기위반에 대한 징계조치는 역 1 년 이상 의무적이다 .

(라) 부조항 (가) 와 (나) 에서 설명된 것 이외에는, 다른 징계조치는 그 행위가 범해졌던 학년 이상은 지속되지 않게 되어있다. [효력 82. 9.1; 재명 §8-19-9, 86. 5. 23; 편집 93. 7.19; am 그리고 편집 97. 5. 197; 편집 01. 2. 22; am 그리고 편집 09. 9. 10] (인가: HRS §302A-1112) (보정: HRS §§302A-1112, 302A-1134)

§8-19-11 학생들이 이 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을 때 대안의 교육 활동과 다른 지원. (가) 종합지역 교육감은 학교일 10 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위기 제거나 정학 조치된 모든 학생들에게 공립이나 사립 기관의 대안적인 교육활동이나 활발한 참여가 적절히 제공됨을 확실하게 되어있다.

(나) 학교일 1 일부터 10 일까지 정학을 당한 모든 학생에게는, 학교장이나 피지명자가 학생의 필요에 근거해서 대안적인 교육활동을 제공함을 고려할 수 있다.

(다)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하와이 행정 규정은 이 장하에서 합법적 학생들을 위해 적용이 되게 되어있다. [효력 82년 9월 12일; am 그리고 재명 §8-19-10, 86년 5월 23일; 편집 93년 7월 19일;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am 그리고 편집 09년 9월 10일] (인가: §302A-1112) (보정: HRS §§302A-1112, 302A-1128)

본 법 3

여름 학교에서의 학생 비행과 징계

§8-19-12 징계 조치; 인가. 여름학교 디렉터 또는 피지명자는 여름 학교에 출석하는 임의의 어떤 학생에게 불리한 징계 조치를 부가할 수 있다. [편집 93년 7월 19일;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am 그리고 09년 9월 10일] (인가: HRS §302A-1112) (보정: HRS §302A-1112)

§8-19-13 금지된 학생 행위: 부류급 위반. (가) 다음 금지 행위사항은 캠퍼스, 또는 다른 교육부 구역,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에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 이벤트 또는 활동 기간동안, 여름학기 중 여름학교의 학생들에 전부 적용된다.

(1) A 부류 위반:

- (가) 폭행
- (나) 강도
- (다) 위험한 도구, 또는 약물; 소지나 사용;
- (라) 위험한 무기; 소지, 또는 사용;
- (마) 마약 소지; 보유 또는 사용, 또는 판매
- (바) 갈취
- (사) 격투
- (아) 총기, 소지 또는 사용
- (자) 살인;
- (차) 불법마약; 소지, 사용, 또는 판매
- (카) 중독성 물질; 소지, 이용, 또는 판매;
- (파) 소유물의 손상 또는 반달리즘
- (하) 강도행위;
- (하.2) 성범죄; 또는
- (하.3) 테러적 위협

(2) B 부류 위반

- (가) 왕따 시키기
- (나) 사이버 왕따 시키기
- (다) 무질서한 행동
- (라) 잘못된 경보;
- (바) 위조;
- (사) 노름;
- (아) 성희롱;
- (자) 심한훈련
- (차) 인터넷 자료 또는 도구의 부적절한 또는 의심스러운 이용, 또는 두가지 전부의;
- (카) 절도; 또는
- (타) 불법침입

(3) C 부류 위반:

- (가) 모욕적인 언어;
- (나) 수업 빼먹기;
- (다) 불복종
- (라) 레이저펜/레이저포인터, 소지나 사용;
- (마) 동의없는 캠퍼스 이탈;
- (사) 흡연이나 담배물질의 사용;
- (아) 무단결석

(4) D 부류 위반

- (가) 밀수품; 소지 또는 이용;
- (나) 경미한 문제의 행위; 또는
- (다) 다른 학교 규정

(나) 부류 C 와 D 위반: 여름 학교 과정에서 8-19-6 항에 정의된 것과 같이 임의 부류 C 또는 D 중 2 가지 사항의 위반을 범하는 여름학교 학생은 첫번째로는 경고를 받고 두번째의 위반에 대해서는 여름학교에서 방면이 될 수도 있다.

(다) 부류 A 나 B 위반을 하는 임의의 학생은 여름학교에서 퇴교되기로 되어있다. 여름학교의 디렉터 또는 피지명자는 여름학교에서의 퇴교이전에 학생과 부모에게 연락하고 모임을 가지기로 되어있다. 여름 학교 디렉터는 종합지역 교감과 함께 보고서를 정리하고 그 부모에게 복사본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라) 여름학교 디렉터나 피지명자는, 긴급상황에서는, 학생의 행위가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인 안전에 즉각적인, 명백한

위협을 보이거나 학생의 즉각적인 제거를 하는것이 극히 방해적 요소로서 다른 학생들이 불필요한 방해로부터 교육을 추구할 권리를 보존하는데 필수적이라면 학생을 위기 제거할 수도 있다. 여름학교 디렉터나 피지명자는 여름학교에서 학생의 복교 이전에 학생과 부모에게 알리고 만나게 되어있다. 모임이 없이는 어떤 학생도 복교될 수 없다. 여름학교 디렉터나 피지명자는 종합지역 교육감과 함께 보고서를 정리하고 부모에게 복사본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다. [효력 86. 5.23; am 그리고 편집 93. 7.19; 편집 97. 5.19; 편집 01. 2.22; am 그리고 편집 09. 9.10] (인가: HRS §302A-1112) (보정: HRS §302A-1112)

본 법 4

학교 수색과 압류

§8-19-14 학생 라커의 개방과 수사 정책.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 라커는 학교 공무원들에 의해 언제든지 또는 원인없이, 그 수색이 학생의 인종, 색깔, 국적, 조상, 성별, 성별의 정체성과 표현, 종교, 장애, 또는 성적 경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반으로 개방과 조사의 대상 (그리고 개의 외부 냄새맡기) 이 된다. 8-19-18 항로부터 8-19-8 항에서나 연관된 일반적인 학교 수색과 압류의 제한사항이 학생의 라커에 사적 프라이버시를 예기하는 형의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8-9-15 항은 학생 라커의 개방과 조사의 대상 (그리고 개의 외부 냄새맡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학생들은 그들의 라커가 언제든지 원인없이 개방과 수사 (그리고 개의 외부 냄새맡기) 의 대상이 된다는것을 짐작해야만 한다. [효력 86. 5. 23; am 그리고 편집 93. 7.19; 편집 97. 5.19; 편집 01. 2.22; am 그리고 편집 09. 9.10] (인가: HRS §302A-1112) (시행: 하와이 헌법. 항목. X, §3; HRS §§302A-1101, 302A-1112)]

§8-19-15 일반적인 학교 수사과 압류 정책. 학생 라커와 관련하여 8-19-14 항에 제공된것을 제외하고, 학생에게는 캠퍼스, 또는 다른 교육부의 구역 부서,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에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이벤트 또는 활동 기간동안에 그 자신들의 사적 권리의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 학교는 질서와 배움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동등하게 유지할 합법적인 필요가 있다. 이 합법적인 필요를 달성하는데, 학교 공무원은 때때로 캠퍼스, 또는 다른 교육부의 구역,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 이벤트 또는 활동 기간동안에 수색과 압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정책으로, 학생의 라커에 관한 8-19-14 항에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수색과 압류는 그 학생이나 학생이 이 장에 금지된 행위나 법규를 위반했거나 또는 위반하고 있는 증거를 보일만한 부대상황에 의해, 만일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다면 허용할 수 있다. 학교의 공무원에 의해 행해진 수색과 압류는 이 부장의 조항들에 의해 지켜지도록 되어있다. [효력 86년 5월 23일; 편집 93년 7월 19일;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am 그리고 편집 09년 9월 10일] (인가: HRS §302A-1112) (보정시행: 하와이 헌법. 조항. X, §3; HRS §§302A-1101, 302A-1112)]

§8-19-16 인가. 학생의 라커에 관한 8-19-14 항에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만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그 학생이나 학생들이 캠퍼스, 또는 다른 교육부의 구역,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 이벤트 또는 활동 기간 동안에 이 장의 조항이나 법규에 금지된 행위를 위반한 증거를 보일만한 부대상황에 의해, 소유물을 수색할 수도 있다. 수색을 시행하는 학교 공무원은, 즉각적인 조치가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의 건강, 안전, 또는 둘다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긴급사항이 아닌 한, 증인으로 봉사하는 다른 학교 공무원을 동반하기로 되어있다. [효력 86년 5월 23일; am 그리고 편집 93년 7월 19일;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am 그리고 편집 09년 9월 10일] (권위: HRS §302A-1112) (보정: 하와이 헌법. 조항. X, §3; HRS §§302A-1101, 302A-1112)

§8-19-17 일반적인 학교 수색과 압류가 수행될지도 모르는 조건. 학생의 라커에 관해 8-19-14 항에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수색과 압류는 다음의 모든 조건들이 이루어졌을때 학교 공무원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1) 만일 수색당시의 시간에, 학생이나 학생들이 이 장에 금지된 법이나 조항에 위반한 증거를 보일만한 부대상황에 의해,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2) 수색이 시행되어야 하는 방식은 수색의 목적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있다.

(3) 수색에 대상이 될 학생은 수색의 목적을 통지받도록 되어있고 학교 공무원에 의해 수색된 증거를 자발적으로 양도할 기회를 가지게 되어있다.

(나) 학교의 학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수색을 이행하는 학교 공무원에 의하여 그것이 한 사람이나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둘 다를 보호하는 데 즉각적인 조치가 필수적인 긴급상황이 아닌 한 그 수색이 시행될 것과 수색의 목적에 대해 통지받도록 되어있다.

(다) 만일 한명 이상의 학생이 위반을 범했다는것이 의심된 이후에는, 만일 실질적이고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하지 않다면, 수색을 시행하는 그 학교 공무원은 그 수색에서의 물건을 가진것으로 가장 의심되는 학생부터 시작하게 되어있다. [효력 86년 5월 23일; am 그리고편집 93년 7월 19일; am 그리고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am 그리고 편집 09년 9월 10일] (인가: HRS §§302A-1112, 703-309(2)) (보정: 하와이 헌법. 항목. X, §3, HRS §§302A-1101, 302A-1112, 703-309(2))

§8-19-18 금지된 수색과 압류. 학생의 라커에 관해 8-19-14 항에 제공된 것을 제외하고:

(1) 어림짐작의 수색은 금지되어있다.

(2) 알몸수색은 금지되어있다.

(3) 학교 공무원은 수색이 한 사람이나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 또는 둘 다에 해악을 방지하는것이 필수적인 때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신체의 접촉을 요구하는 수색은 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4) 검색의 과정에서, 학생에게 불리한 완력의 사용은 학교 공무원이 믿기에 그 완력이 한 사람이나 사람들의 건강 이나 안전, 또는 둘 다의 해악을 방지하기에, 또는 학생이 수색을 육체적으로 저항하는 곳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다.

(5) 이 부장의 조항하에 시행된 검색은 검색이 시행된것에 대한 물건이나 물건들에 제한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수색 도중에 관찰된 임의의 다른 물건은 그 물건의 소지가 이 장의 조항이나 법규의 위반일 때나, 또는 비-압류가 수색을 시행하는 학교 공무원을 포함하여, 한 사람이나 사람들 또는 둘 다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의 궁지에 넣을 때는 학교 공무원에 의해 압류되도록 되어있다. [효력 86년 5월 23일; 편집 93년 7월 19일;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am 과 그리고 편집 09년 9월 10일] (인가: HRS §302A-1112) (보정: 하와이 헌법. 조항. X, §3; HRS §§302A-1101, 302A-1112)

본 법 5

위반 신고

§8-19-19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류 A와 B의 위반 신고. (가) 이 장에 정의된 것과 같이 부류 A 나 B와 위반의 목격자인 임의의 교사, 공무원, 또는 교육부의 다른 직원, 또는 부류 A 나 B 위반이 학생, 교사, 공무원, 또는 교육부의 다른 직원이나 또는 학교 소유지 관련에 반해서, 범해졌거나 범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은 교장이나 피지명자에게 그 사건을 즉시 보고하게 되어있다. 이 조항에 있는 어떤것도 교장이나 피지명자에게 C 나 D 부류의 위반을 보고하는것으로부터 교사, 공무원, 또는 교육부의 다른 직원을 금지하거나 방해하는것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되어있다.

(나) 부류 A 나 B 위반의 보고서를 수령하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그 행위가 경찰에게 직통으로 전화통화 하는것이 필요한지 또는 그 행위가 학교 징계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인식된 위험이 있고 그 행위가 학교 직원에 의해 처리될 수 없을 때마다 경찰을 부르도록 되어있다.

(다)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위반신고를 학교일 5 일 이내에 교육부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사건정보를 기록하도록 되어있다.

(라) 교장이나 피지명자는부조항 (C) 에 부합하여 보고된 사건 이후 5 일 이내에 만일의 부류위반에 행해진 징계조치를 신고 교사, 공무원, 또는 다른 직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마) 만일 교사, 공무원, 또는 다른 직원이 그 신고 위반을 근거로 취해진 징계조치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 보고된 사건이 10 일 이내에 교사, 공무원, 또는 다른 직원에 의해 어떤 징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면, 그 신고를 한 사람은 서면으로 종합지역 교육감에게 항소할 수 있다.

(바) 부조항에 제공된 바와 같이 항소를 수령함의 학교일 5 일 이내에, 종합지역 교육감이나 피지명자는 항소인에게 징계조치가 위반신고를 근거로 취해졌다는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82년 9월 1일 유효; am, 재명 §8-19-11, 86년 5월 23일, 93년 7월 19일 am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편집, 2009년 9월 10일 편집] (인가: HRS§§302 A-1112, 302 A-1002)
(보정: HRS 302A-1112, 302A-1102)

§8-19-20 부류 A 와 B 의 위반 신고에 근거한 손해 보상. 18-19-19 항 하에 요구된 사항으로서 성심성의의 신고를 하는 임의의 교사, 공무원, 또는교육부의 다른 직원은 302 A - 1003 항, 하와이 개정 규정법규에 부합하여 보장을 받고 해악이 가해지지 않도록 되어있다. [82년 9월 1일 유효; am 재명 §8-19-12, 86년 5월 23일, 93년 7월 19일 am,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편집, 2009년 9월 10일 편집] (인가: HRS§§302 A-1112, 302 A-1003) (보정: HRS 302A-1112, 302A-1103)

§8-19-21 학교에서 발생하는 부류 A 나 B 의 위반 신고 불이행: 결과.

(가) 교육감은 모든 학교와 사무실에 캠퍼스 또는 다른 교육부 구역,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에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 이벤트 또는 활동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류 A 나 B 의 위반을 신고하지 않는 교사들, 공무원들, 또는 다른 교육부 직원들에게 불리한 책임의 징계조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연간 서면 통지로 제공하게 되어있다. 징계조치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1) 구두 경고;
- (2) 서면 경고;
- (3) 지불 없는 정학;
- (4) 강등, 또는
- (5) 퇴학.

(나) 8-19-19 항에 의해 필요한 부류 A 또는 B 위반을 신고하지 않는 교사, 공무원, 또는 교육부의 기타 직원은 교육부의 규정과 절차에 부합하여 징계될 수 있다.

(다) 캠퍼스 또는 다른 교육부 구역, 교육 교통시설의 부서에서, 또는, 학교 소유지 내외의 교육부 후원 이벤트 또는 활동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부류 A 나 B 의 위반을 신고하지 않아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교사들, 공무원들, 또는 다른 교육부 직원들은 교육부의 절차와 규정 또는 주 법에 의해서 또는 시행가능한 단체협약체결에 제공된 것으로써 징계조치를 항소할 권리를 지닌다. [82년 9월 1일 유효; am, 재명 §8-19-13, 86년 5월 23일, 93년 7월 19일 am,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편집, 2009년 9월 10일 am, 편집] (인가: HRS§§302 A-1112, 302 A-1002) (보정: §3; HRS 302A-1112, 302A-1002)

본 법 6

경찰 인터뷰와 체포

§8-19-22 학교와 관련된 위반을 위한 학교에서의 경찰 인터뷰.

(가) 경찰 공무원들은 학생에게 질문하기 위해 학교에 나타날 수 있다. 학교에 도착하면, 그 경찰 공무원은 그 학생을 인터뷰하기 위한 허가증을 요청하기 위해 교장이나 피지명자에게 인도되기로 되어 있다. 만일 학생을 인터뷰할 허가증이 수락되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경찰 인터뷰와 인터뷰가 시행되었을 때 참석할 권리에 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일 교장이나 피지명자가 부모에게 통지할 수 없거나 또는 그 부모가 통지를 받고서 출석하기를 거절하거나, 또는 만일 그 통지가 주어진 후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후에 부모가 경찰 인터뷰를 위해서 학교에 나타나지 않으면 인터뷰가 시행되어질 수도 있다.

(나)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그 경찰 공무원에 의해 배제되지 않는 이상 경찰 인터뷰 도중에 출석하게 되어있다.

(다) 만일 한 학생이 체포되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8-19-24 항에 전술되어있는 절차를 따르게 되어있다. [82년 9월 1일 유효; am, 재명 §8-19-14, 86년 5월 23일, 93년 7월 19일 am,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편집, 2009년 9월 10일 am, 편집] (인가: HRS§§302 A-1112) (보정: §3; 하와이법, 조항 X, §3; HRS 302A-1101, 302A-1112).

§8-19-23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위반을 위한 학교에서의 경찰 인터뷰.

(가) 경찰 공무원들은 학교에 연락하고 방문의 성질이나 정황에 대해 교장이나 피지명자에게 조언해야 한다. 학교에 도착하면, 그 경찰 공무원은 그 학생을 인터뷰하기 위한 허가증을 요청하기 위해 교장이나 피지명자에게 인도되기로 되어있다.

(나) 임의의 인터뷰 이전에,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경찰 인터뷰와 인터뷰가 시행되는 동안에 참석할 권리에 관해 부모에게 알리도록 한다. 인터뷰는 부모에게서 구두 동의를 취득하면 개최될 수 있다. 이 부조항의 통지서와 동의 필요사항은 만일 인터뷰의 성질이 부모나 또는 가족의 일원이 학생에 불리한 위반을 범하거나 의심이 가는 어린이 학대 또는 다른 위반에 연루되어 있다면 준수하지 않게 되어있다

(다)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일지를 유지하고 학생의 이름, 경찰 인터뷰의 날짜,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경찰 공무원의 이름과 배치 번호, 그리고 경찰 보고서 번호를 기록한다.

(라) 경찰에 의해 학생이 체포된 경우 교장이나 피지명인은 8-19-24 조항에 의한 절차를 따르게 되어있다. [82년 9월 1일 유효; am, 재명 §8-19-15, 86년 5월 23일, 93년 7월 19일 am,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편집, 2009년 9월 10일 am, 편집] (인가: HRS§§302 A-1112) (보정: 하와이법 X 조항 §3; HRS 302A-1101, 302A-1112)

§8-19-24 학교에서의 경찰 체포. (가) 그 경찰은 교장이나 피지명자에게 인도되게 되어있다. 가능한 언제든지 학생은 경찰 공무원이 미결정인 체포에 효력을 발생시키도록 교장의 사무실에 보내져야만 한다. 학생을 체포하기 위해서 경찰이 도착하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부모에게 통지하기 위한 성심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82년 9월 1일 유효; am, 재명 §8-19-16, 86년 5월 23일, 93년 7월 19일 am,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편집, 2009년 9월 10일 am, 편집] (인가: HRS§§302 A-1112) (보정: 하와이법 X 조항 §3; HRS 302A-1101, 302A-1112)

본 법 7

반달리즘의 손해 배상

§8-19-25 반달리즘의 법적책임. (가) 임의의 학생이 공공 학교 건물, 시설, 또는 부지에 불리한 반달리즘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 손해배상이 학생이나 부모에게 의하여 행해지게 되어있다. 반달리즘이 학생에 의해 범해졌다고 증명될 수 없을 때는 손해배상은 없게 되어있다.

(나) 이 장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하와이 주는 학교 소유물에 손상의 회복에 대한 임의의 적절한 조치 유발을 선택할 수 있다.

(다) 만일 학생이 이 장 하의 반달리즘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될 예정이면, 손해배상 절차는 오직 이 장 하의 그 징계조치가 완료되고 조사를 시행하는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학생이 이 장 하에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을 믿을만한 이유 확보 이후에 시작되게 되어있다. [86년 5월 23일 유효; 93년 7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편집;

2009 년 9 월 10 일 am, 편집] (인가: HRS§§302 A-1112) (보정: §3; HRS 302A-1112, 302A-1153)

§8-19-26 반달리즘에 적용될 절차. (가) 교장이나 피지명자가 학생이 임의의 공공 학교 건물, 시설, 또는 지부에 불리한 반달리즘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나) 만일 반달리즘이 이 장 하의 징계조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8-19-7, 8-19-8, 8-19-9 과 8-19-10 항 이하에 요구되는 조사의 일부로서, 사실의 결정과 이 장 하의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정황을 포함하게 되어있다. 손해배상에 관련된 세부적인 조치는 징계조치가 결정되고 항소 절차가 소진될 때까지 미정으로 보류되게 되어있다.

(다) 만일 그 수사후, 교장이나 피지명자가 학생이 반달리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믿으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그 학생과 부모와 함께 회의를 계획하게 되어있다. 회의 출석은 교장이나 피지명자, 학생, 그리고 부모로 제한되게 되어있다.

(라) 회의의 사전 서면 통지는 부모에게 우송함에 의해 전달되도록 된 교육부의 양식으로 작성되게 되어있다. 어떤 학생 이나 부모도 부모가 통지후 의견이 경청받을 기회를 가지기 이전에는 손해배상을 할 요구를 받지 않게 되어있다. 부모에게 하는 통지서는 결과물, 회의의 일자, 시각, 위치를 포함하게 된다. 통지는 회의의 날짜 이전의 적어도 역 15 일 이전에 우송되게 되어있다. 통지의 효과적인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부모의 모국어로 제공 되게 되어있다. 학교는 전화와 같은, 학교와 부모사이에 서면 통신을 증가시킬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다.

- (1) 부모는 통지의 날짜로부터 역 7 일내에 통지서에 회답을 하도록 되어있다.
- (2) 회의 날짜는 만일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연락해서 새 회의 날짜를 주선하고자 한다면 재계획 될 수 있다는것이 통지서 내에 제공되어있다. 회의의 재계획을 하는 요청은 통지서 날짜의 역 7 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어있다.
- (3) 회의와 비공식적 합의는 \$3,500 이 초과하지 않는 사례에서 동의될 수 있다. 만일 합의에 도달하면, 손해배상에 대한 서면 동의서가 부모와 학교 사이에서 시행되게 되어있다.

서면 동의서는 오직 손상액이 \$3,500 를 넘지 않을 경우에만 시행되기로 되어있다.

- (마) 만일 부모가 통지서에 시간 제한 이내에 회답하지 못하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이하를 할 수 있다:
 - (1) 만일 교장이나 피지명자가 회답에 대한 그 실패가 선의의 이유였다고 결정하거나 만일 회의가 학교나 학생에게 최선의 결과라면 재계획한다; 또는,
 - (2) 통지내용은 회의에서 교장과 피지명자와의 만남이 부모에게 진술할 기회를 위해서 주어졌었다는 것과, 부모가 그 통지에 회답하지 않은 이유로, 그 문제가 세부 조치를 위해서 교장이나 피지명자에 의해 종합지역의 교육감에게 위탁될 것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알린다.

(바) 회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행되게 되어있다.

(1) 회의에 출석하는 일행은 교장이나 피지명자, 학생과 부모로 되어있다. 반달리즘이 일어난 학교의 교장이나 피지명자, 학생과 부모를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사람도 이유를 막론하고 회의에의 참석이 허락되지 않도록 되어있다.

(2) 회의에서, 반달리즘이 일어난 학교의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조사의 결과와 손해배상의 필요조건을 제시하게 되어있다.

(3) 만일 학생과 부모가 금액과 손해배상이 행해질 방식에 대해 동의하면, 교장이나 피지명자, 그 학생과 부모는 손해배상을 할 것이며, 그 시간은 손해배상이 완료되어질 시간 이내에 행해질 것이며, 그 손상이 \$3,500 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제공하는 교육부의 양식에 근거한 서면동의서를 제작하게 되어있다. 손해배상은 학생이나 부모에 의한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포함한 임의의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만일 손상이 \$3,500 을 넘을 경우, 그 문제는 세부조치를 위해 법무장관에게 그 문제를 회부하도록 되어있는 종합지역 교육감에게 회부하기로 되어있다.

(4) 손해배상이 완료되었을때, 수사와 회의에 관련된 모든 기록과 서류들은 학교에 3 년동안 유치하게 되어있다. 어떤 수사에 관한 정보, 회의와 조치도, 소송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누설되지 않게 되어있다.

(5) 만일 서면동의가 제작되고 부모나 학생이 그 동의서의 결정들에 따르는것에 실패하면,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그 문제를 종합지역 지역 교육감에게 전송하게 되어있다. 그 종합지역 교육감은 세부 조치를 위해 법무부 장관의 위탁을 포함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재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다.

(6) 만일 그 학생이나 부모가 교장이나 피지명자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교장이나 피지명자는 수사과 회의에 관련된 모든 기록과 서류들을 전송하기로 되어있고, 법무부 장관에게 그 문제의 위탁을 포함할 수 있는, 문제를 재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종합지역 교육감에게 그 문제의 결과물과 정황을 보고하게 되어있다. 만일 손상액이 \$3,500 을 초과하면, 그 문제는 세부 조치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위탁이 되게 되어있다. [86년 5월 23일 유효; 93년 7월 19일 am, 편집; 97년 5월 19일 편집; 01년 2월 22일 편집; 2009년 9월 10일 am, 편집] (인가: HRS §§302 A-1112) (보정: §3; HRS 302A-1112, 302A-1153)

§8-19-27	폐지됨	[01년 2월 22일 폐지]
§8-19-28	폐지됨	[01년 2월 22일 폐지]
§8-19-29	폐지됨	[01년 2월 22일 폐지]